【별표 1】 공단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7의2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
【별표 2】 우대사항 항목 (매 전형 가산점)

○ **사회복지직 · 자전거관리직 직원채용 전형 가산점**

- 〔**매 전형**〕 취업지원대상자(만점의 5~10%)
- 〔**매 전형**〕 사회적 배려 대상자

구 분	장애인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다문화가정	한부모가족
배 점	만점의 5% 부여				
확인서류 (면접시 징구)	장애인 증명서	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차상위 계층 확인서	가족관계증명서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위 항목 중 2개 이상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반영되며,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별도 부여